

| | |
|------|--------------------|
| 변론기일 | 2017. 6. 13. 15:40 |
|------|--------------------|

| | | | |
|-----|-------|----|---|
| 재판부 | 제4행정부 | 주심 | 나 |
|-----|-------|----|---|

사 건 2016누4144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하승수
피고(항소인) 대통령비서실장 외 2

| |
|------------|
| 부분영수 |
| 2017. 6. . |
| 인 |

준 비 서 면

2017. 6. .

피고(항소인)들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귀중



준 비 서 면

사 건 2016누4144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하승수

피고(항소인) 대통령비서실장 외 2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들(항소인, 이하 ‘피고들’라고 합니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원고가 2017. 5. 2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들에게 석명을 요청한 내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정보들의 현황 등에 대하여 피고들이 확인을 한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 정보들 중 아래 부분(피고 대통령경호실장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기재 목록 4 순번 1 ① 정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국가 기록원으로 이관됨으로써 그 산하의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현재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들로서는 그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어느 것으로 지정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피고 대통령경호실장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기재 목록 4 순번 1 ① 정보 (정보공개법 제8조에 의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목록의 2013. 3. 1.부터 2014. 7. 31.까지에 해당하는 분)는 당시 대통령경호실에서는 정보공개법 제8조에 의한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보목록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7. 6. .

피고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고영석

담당변호사 서규영

담당변호사 조철호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귀중

